

대출거래약정서 (가계용—한도담보거래)



■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홍콩상하이은행 _____ 앞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홍콩상하이은행 _____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해당 예금의 개별약관(실세금리저축예금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합니다.

제1조(거래조건)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있는 경우, 은행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 표시합니다)

대출금액	금 원정 (₩)	대출기간	년
대출종류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일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매월분할상환)
대출개시일	년 월 일	대출기간만료일	년 월 일
대출이자율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여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여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은행내부기준금리부여신	은행내부기준금리 + ()%
		<input type="checkbox"/> CD 91일물기준금리부여신	91일물 CD유동수익률 + ()%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여신	<input type="checkbox"/> 대출개시일 <input type="checkbox"/> 최초이자 납입일로부터 ()년간 고정금리 ()%를 적용하며 이후 은행내부기준금리 + ()% 적용
<input type="checkbox"/> 수신(신탁)금리부여신	수신(신탁)금리 + ()%		
지연배상금률	<input type="checkbox"/> 대출이자율 + ()% <input type="checkbox"/> 연체기간이 ()개월 이내에는 ()%, ()개월 이내에는 ()%,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단, 지연배상금률은 최고 연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변동금리여신의 경우에도 원리금 납입이 4회(3개월)이상 연체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위험 안내문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_____ (인 또는 서명)	대출이자율 및 지연 배상금률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하거나 본인이 본인의 대출거래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함으로써 일부 또는 전액을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거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월 ()일까지 사용한 원금과 이에 따른 이자총액의 ()% 또는 ()만원 중 큰 금액("매월분할상환금액")을 [<input type="checkbox"/> 이자납입일(), <input type="checkbox"/> 기타()]에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납입방법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정한 매월 이자납입일에 상환합니다. ※ 대출이자는 대출거래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납입일(결제일)	<input type="checkbox"/> 28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에 상환하기로 합니다. ※ 이자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납입일은 익영업일로 이연됩니다. _____ (인 또는 서명)		
담보물 현황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임대사실 없음 임대금액(_____ 세대 _____ 만원)		
수수료	1) 중도 한도해지 수수료 한도해지 금액의 _____ %에 해당하는 금액 ※ 한도해지시마다 발생하며 한도해지일에 은행이 자동인출방식으로 인출합니다.	2)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1. 산식 : {(약정한도X()%-매일최종여신잔액) X수수료율÷365}의 운용기간 중 합계 2. 수수료율 : 연()% ※ 「운용기간 중 합계」란 전월 이자납입일(또는 대출시작일)부터 금월 이자납입일(또는 약정해지일) 전날까지 매일 계산된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3) 기타
대출기한 자동연장 등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한연기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은행은 "기한연기 및 금리변경 등"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은행이 정하는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기 및 금리변경 등을 처리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제2조의 대출이자율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되기로 합니다.

- ① 은행내부기준금리부여산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대출개시일과 그 날로부터 제2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에 해당하는 날 각각에 대해 은행이 고시한 은행내부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은 제2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별도의 통보없이 변경하기로 합니다. 은행내부기준금리는 변동주기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즉, 변동주기가 1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의 은행내부기준금리 상한액이 고리되고 변동주기가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채권평가(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가 고시하는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이 은행의 예상 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은행의 조달비용은 가변적이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내부기준금리는 인상 또는 불변하거나 시장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될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은행내부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동에 따른 적용금리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에 의한 대출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 내에 변경된 채무잔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대출 해지의사 통보 후 1개월 내에 채무잔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대출이자율에 동의하고, 해지의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CD91일률 기준금리부여산이란 대출실행일과 변동주기에 따른 금리변경적용일 각각에 대해 전영업일자로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CD91일률 최종가수익률(15시 30분 고시)을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은 제2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마다 은행의 통보없이 변경되기로 합니다.
- ③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 여신이란 제2조 대출이자율에서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기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고정금리 적용이 완료되어 은행내부기준금리 적용시에는 고고과 별도의 약정이란 본 약정서면으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은행내부기준금리부여산으로 변경됩니다. 이 때 고정금리는 금리고정기간별 은행의 예상 또는 실제조달원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④ 수신금리부여산이란 고객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대출이자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제 3 조 (대출실행)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개시일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됩니다. 다만, 은행은 다음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 및 담보제공자가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 및 정래 발행할 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를 제공기로 한 경우, 은행 소정기준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질권설정 등 제반 담보 제공이 완료될 것
- ② 담보권원에 대하여 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보증을 기안하고 은행 앞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기 완료될 것
- ③ 지급불능, 파산, 회산신청,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등 본인의 신용악화상태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에 따른 기한전 채권변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 ⑤ 매회입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주채권구입대출의 경우에 한합니다).
- ⑥ 은행 소정의 채권서류가 은행이 정할때까지 판관되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되어 있을 것

제 4 조 (환도거래)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본인이 은행이 정한 환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약정에 따른 경우 아래 각 항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① 대출거래계좌와 관련하여,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대출거래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인출하고 대출 원리금 기타 비용 등 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이 정한 환도금액을 초과하여 상환할 경우 당해 초과분은 다음 지급기일에 이행하여야 하는 대출원리금 및 기타 비용 등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자동 충당됩니다.
- ③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금 원금이 조에 의하여 본인의 대출거래계좌에서 인출함으로써 이 약정에 의한 대출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에 관하여 매월 제2조에서 정한 이자납입일까지 1일 단위로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월의 이자납입일로부터 다음 이자납입일 하루 전날까지의 기간(대출일수의 계산은 한달씩 방식에 의한다)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는 각 해당월의 이자납입일에 본인의 대출 거래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하며 이 경우 상환하지 않은 이자는 이자납입일일 대출원금화됩니다.
- ④ 대출의 연체, 전환 및 대출환도금액은 아래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1. 이자를 위 제2항에 따라 매월 본인의 대출거래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은 어느 시점의 대출금 원금 또는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의 합계액이 이 약정에 의한 대출환도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대출환도금액을 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환도초과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만일, 본인이 위 대출환도초과금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대출환도초과금액에 대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분할상환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경우 이를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본인이 제2조에서 열거한 어느 사항 중의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은행은 언제든지 본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이 약정을 해지하거나 대출환도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중도 환도해지)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① 본인은 제2조에서 정한 대출기간 만료일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에 대하여 환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을 포함하여 이하 같습니다) 전에 환도해지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 환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중도 환도해지 수수료는 중도 환도해지 금액에 대하여 제2조에서 정한 중도 환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되며, 중도 환도해지 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환도해지하는 대출금액으로 합니다.
- ④ 위 제 2항 및 제 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 환도해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은행의 채권회보 및 회수를 위해 상환하게 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요구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상환의 경우
 4. ()

제 6 조 (약정환도 미사용 수수료)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① 본인은 은행과 약정한 환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제 2항 및 제 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약정환도 미사용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약정환도 미사용 수수료는 약정한 환도금액에서 은행이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약정환도 미사용 수수료율(365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되며, 약정환도 미사용금액은 매일의 최종예산잔액을 기준으로 매일 계산 후 전월 이자납입일(또는 대출시작일)부터 당일 이자납입일(또는 약정환도일) 전날까지의 약정환도 미사용 수수료 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이자납입일(또는 약정환도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약정환도 미사용 수수료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자납입일 또는 약정환도일에 환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잔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잔액이 예금일 경우에는 동 예금에서 차감합니다.
 2. 환도금액 부족으로 수수료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을 곧 변제하거나 해당 대출거래계좌에 변제를 위하여 입금하기로 하여 입금된 자금은 부족한 수수료 변제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3. 약정환도 미사용 수수료 납입지연시에는 은행은 추가가산 취급준등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부담채무)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감정료, 수입인지대, 기타 법적절차비용 등 대출관련비용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본인은 은행이 지출한 비용에 제2조의 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은행의 청구시 즉시 변제하기로 하며 또한 은행이 이를 대출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 및 매월 분할상환원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환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환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2조에 의하여 본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본인은 계약해지일까지 납부 지체된 대출금 원금, 발생이자 및 동 금액들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합산금액과 본인이 실제 변제할 때까지 동 합산금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순배상금으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④ 은행이 채권보전, 채권회수 및 담보권실행 등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전항의 순배상금에 포함됩니다.

제 9 조 (담보, 보험)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①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대출로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 ② 이 약정서에 의한 채무 및 정래 발행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기로 한 경우, 본인은 '대출거래신서'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③ 담보물이 사변, 천재지변 등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전부·일부멸실 또는 감소되어 은행이 담보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본인은 즉시 부족금 상당액을 상환하거나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④ 담보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제공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은행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한 가지 처분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 ⑤ 처분된 담보물의 환가액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 후 부족액이 있는 경우 본인은 그 금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위 충당 후 잔액이 있는 것은 은행은 동일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⑥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본인의 예금, 적금, 상호부금, 신차, 여음, 수표, 동산 및 기타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은행이 이를 처분, 추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제9항에 준하여 처리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제 10 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권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권)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약정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징리금, 법정징리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 개시, 갱신, 분할, 병합, 증액, 감액 또는 이자원기된 경우에도 그 위에 (권)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적인 신적이 기한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권)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권)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별	증서(기)·번호	명익인 또는 위탁자	금액	20 . . . 까지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계약액)			

제 11 조 (사용제한에 관한 특약)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① 은행은 본인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중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환도금액에 불구하고 대출(환)도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사용제한을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임대차)

본인은 이 약정서에 대출을 위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건물에 관하여 타인에 대한 임대차실 유무를 제2조에 기재하며, 이와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은행은 본인을 상시시켜 담보권실행 등 제반채권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동의할 것(이 조항은 은행이 정하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되어 있을 것)에 동의합니다.

제 13 조 (채권의 양도승낙)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본인은 은행이 한국수업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양도 등을 위하여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에 대하여 미리 승낙합니다.

제 14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15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또는 서명)
------	-----------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본인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담보제공자	(인 또는 서명)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인지세 납부내역
• 대출금 4천만원 이하 면제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4만원
• 대출금 1억원 이하 7만원
• 대출금 10억원 이하 15만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